

# 중대재해 발생 시 원·하청 간 책임 소재가 궁금합니다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글 편집실



**Q** 하청업체가 공장 외 지역에 설비를 설치하고, 하청업체 책임 하에 제품을 생산하여 원청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범위에는 원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는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안전보건 조치 의무보다 그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즉,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에게 책임 소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비슷한 사례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A원청에 부품을 생산 및 납품하는 B하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원청은 B하청에 업무를 맡겼고, 이를 다시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노동부는 B하청의 사업장 소유주가 A원청이며, 해당 사업장에 A원청 직원 수십 명이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A원청으로 보고 원·하청업체 대표 모두를 입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원청이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에서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원청은 그 책임 소재가 없을 수 있습니다. 🍵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보건관리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관련 전문가가 자세히 답변해드립니다.  
54P <독자의 소리>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세요.